이사회 운영규정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권한)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3. 이사회는 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4. 전 항의 경우 이사회는 그 사안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제 5 조 (의장)

1.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이사 아닌 자의 출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가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케 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3 장 회 의

제 7 조 (종류)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월 1 회, 3 째주 월요일에 개최한다. 단, 필요 시 대표이사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8 조 (소집권자)

1.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5 조 제 2 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의장 직무대행의 순위에 따른다.
2.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소집 절차)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를 정하고 정관에 의거 1 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0 조 (결의 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 398 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안건의 추인)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부의사항

제 12 조 (부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상법 제 362 조)
   (2) 주주총회 의장의 결정(상법 제 366 조의 2)
   (3) 영업보고서의 승인(상법 제 447 조의 2)
   (4) 자본의 감소(상법 제 438 조)
   (5)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 447 조)
   (6) 정관의 변경(상법 제 433 조)
   (7)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상법 제 517 조, 제 522 조, 제 530 조의 2, 제 519 조)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상법 제 374 조)
   (9)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상법 제 374 조)
   (10) 이사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 382 조, 제 385 조)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 340 조의 2, 제 542 조의 3)
   (12) 이사의 보수(상법 제 388 조, 제 415 조)
   (13)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상법 제 417 조)
   (1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상법 제 400 조)
   (15) 주식배당 결정(상법 제 462 조의 2)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 일반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 사업의 진출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지점(사업장),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상법 제 393 조 제 1 항)
   (4)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상법 제 526 조 제 3 항, 제 527 조 제 4 항)
   (5)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상법 제 527 조의 2,3, 상법 제 530 조의 11)
   (6) 주식의 소각(상법 제 343 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3)
   (7) 후원금/사회공헌기금 등 운영
   (8) 기타 경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상법 제 416 조)
   (2) 사채의 모집(상법 제 469 조)
   (3)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상법 제 461 조 제 1 항)
   (4) 전환사채의 발행(상법 제 513 조)

(5)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상법 제 516 조의 2)
(6)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상법 제 393 조 제 1 항)
(7)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4. 이사, 이사회,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정 및 공동대표의 결정(상법 제 389 조)
(2)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승인(상법 제 397 조)
(3)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상법 제 398 조)
(3-2) 이사의 회사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상법 제 397 조의 2)
(4) 이사의 직위 위촉 및 해촉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상법 제 393 조의 2)
(6)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 393 조의 2)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상법 제 393 조의 2)
(8) 기타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내부회계관리규정·제개정의 결의 및 중요정책의 승인
(1)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조직구조, 보고체계 및 성과평가 연계방식 검토
(2) 회사 내 재무보고 및 부정위험과 관련된 제반위험에 대한 이해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경영진의 중요한 조치사항 검토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변화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조치사항 검토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결과 및 개선조치에 대한 확인 등
(단, 내부회계관리규정·제개정의 결의 및 중요정책의 승인을 제외한 항목은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6.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2) 기타 법령, 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한다.
(3)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공시 규정사항은 별첨 참조

제 5 장 소위원회

제 13 조 (부문 임원회의)

1. 회사는 이사회와는 별도로 신속하고 원활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집행임원 및 간부로 구성되는 부문 임원회의를 둘 수 있다.
2. 부문 임원회의는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중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3. 이사회 의장은 부문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는 부문 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한다.

제 13 조의 2 (위임)

1.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및 부문 임원회의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2. 대표이사 및 부문 임원회의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 업무담당 임원에게 당해 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 14 조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 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 15 조 (감사위원회)

1. 이사회는 관련 법규에 의거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2. 감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로 정한다.

제 16 조 (기타)

이사회는 관계 법령에 의거 필요에 따라 상기 위원회 이외에 기타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6 장 기타 사항

제 17 조 (간사)

1. 이사회의 간사를 두고 인사팀장을 이에 임한다.
2.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과 이사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8 조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9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05. 6 월 이사회부터 시행토록 한다.
2. 본 규정은 2012.04.16 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03.11 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7.07.17 부터 시행한다.

 # 별 첨

-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시규정, 정관 관련 및 기타 이사회 부의사항

구 분	비 고
1.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한 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2
2. 일반공모증자의 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3. 증자 또는 감자에 대한 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 제 1 항
4. 대규모 내부거래 및 주요 내용의 변경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써 거래 금액이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이거나 50 억원 이상인 내부거래 행위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건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건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건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분기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2
5. 내부거래에서 기 의결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 (1) 거래 목적, 거래 대상, 거래 상대방의 변경 (2) 거래 금액, 거래 단가 등의 20% 이상의 변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2

구 분	비 고
6.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1) 이사 또는 주요주주(10% 이상 주식 소유) (2) 제 1 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 1 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자가 제 4 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상법 제 398 조
7. 우선주식 발행 시 우선배당률, 존속기간 등 결정	정관 제 7 조의 2
8. 신주의 배정	정관 제 9 조
9.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등	정관 제 9 조의 3
10. 일반공모증자 방식의 신주 발행	정관 제 9 조의
11. 명의개서 대리인 선정	정관 제 10 조
12.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정관 제 12 조
13. 전환사채의 발행	정관 제 13 조
14.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정관 제 14 조
15. 주주총회의 소집	정관 제 15 조
16. 자산재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자산재평가법 제 25 조
17. 주권의 분할 또는 병합	공시규정
18.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상의 차입에 관한 결정 - 만기 1 년 이내의 사채금액을 포함하며,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	공시규정
19.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상의 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때	공시규정
20. 천재, 지변, 전시, 사변, 화재 및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	공시규정
21.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상의 증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공시규정

구 분	비 고
22.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 담보 :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채무보증 : 입찰, 계약, 하자, 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 제외	공시규정
23. 풋백옵션 계약 관련 - 다른 법인의 지분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가격으로 그 지분증권 등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 체결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1 조 / 공시규정
24.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가지급 또는 금전 대여	공시규정
25.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상의 신규시설 투자,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공시규정
26. 자본/기술 도입, 기술 이전/제휴에 관한 계약 체결 및 계약 만료	공시규정
27.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 총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공시규정
28.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공시규정
29.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상인 때	공시규정
30.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0 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때	공시규정
31.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0 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때	공시규정
32.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상의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이 발생한 때	공시규정
33.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체결 및 해지	공시규정
34.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 분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때	공시규정
35. 회계처리 기준 변경 또는 회계추정 변경	공시규정
36. 해외증권시장에 주권 상장	공시규정
37. 유상증자 시 실권주 처리	공시규정
38. 신탁계약(일명 '자사주펀드')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공시규정
39.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상의 사모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 및 그 이후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 변동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공시규정

구 분	비 고
40. 타 법인이 발생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취득 * 공시규정 :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	공시규정
41. 주식배당 및 현금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중간배당(분기배당 포함)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결정한 때	공시규정
42. 기타 법령 및 공시 관련 규정과 관련된 사항	-
43. 5 억 이상 후원금/사회공헌기금 등 운영	-